

[재공고]

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제1기(보궐) 근로자위원 선출

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의하여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제1기(보궐)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.

1. 노사협의회 설치근거 및 주체

가. 근거: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나. 필요성: 노사 간의 격의 없는 의사소통으로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,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다. 주체: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 및 사용자

1) 근로자: 직원(계약직 포함). 단,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직원 제외

2) 사용자: 단장, 부서장, 인사·노무·조직·기획·감사 등을 담당하는 총장이 위촉한 직원

2. 선출 근로자위원 수: 1명

가. 입후보자격: 현재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에 근무중인 직원

1) 근로자 중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자(※ 연구원의 경우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자)

2)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나. 입후보방식: 직원 10명 이상의 추천서를 노사협의회에 제출

다. 입후보 시기 : 공고일로부터 2022. 1. 14. 오후 5시 까지

라. 선 거 일 : 2021. 1. 17.(월) ~ 1. 18(화),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

마. 선거장소: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(학무관 505호)

바. 당선요건(선출방법): 입후보자 중 근로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, 동수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 근속자, 근속연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.

※ 단일 후보자의 경우 찬반 투표로 진행될 수 있음

사. 근로자위원 선출방법: 근로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, 다수 득표자 순으로 근로자위원의 당선을 결정

아. 입후보 신청서 제출처 :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(학무관 505호)

3. 근로자위원의 활동: 3개월 마다 정기회의 참석 및 근로자를 대표하여 발언

4. 관련 문의 및 의견수렴 창구: 산학협력단 산학연구팀 담당 구남양(☎ 041-550-5109)

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1월 11일

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